

제1차 산업경제위원회
2008. 1. 24 (목) 10:30

충청북도 남북농업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
검 토 보 고 서



산업경제위원회

충청북도 남북농업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

1. 제출자 : 이영복 의원의외 6인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제출일자 : 2008년 1월 14일

나. 회부일자 : 2008년 1월 14일

3. 제안 이유

-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한의 인적·물적 교류가 활발해지고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남북교류에 활기를 띠고 있음에도 충청북도의 경우 교류실적이 저조 할 뿐 아니라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실정으로 충청북도가 남북농업협력사업 추진으로 민족전체의 복리향상을 도모하는 한편, 사회·인도적인 교류를 통해 남북한 신뢰 구축으로 통일시대를 대비하여 통일농업의 교두보를 확보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.

4. 주요내용

- 가. 남북농업교류협력사업의 범위를 북한의 주민과 공동으로 행하는 농업과 관련한 각종 사업과 인도주의적인 사업으로 사업범위를 정함(안 제2조).
- 나. 남북농업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은 북한에 진출한 법인·단체와 연계하여 추진하고, 필요한 경우 협력사업을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

수 있도록 함(안 제3조).

다. 도지사는 남북농업교류협력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남북농업교류협력기금을 설치·운영하도록 함(안 제5조).

- (1)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,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음.
- (2) 기금의 조성은 도 및 시·군의 출연금, 기금의 운용수익금, 기타 수입금으로 정함.
- (3) 기금의 용도는 남북농업교류협력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, 기금조성·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

라. 남북농업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북도남북농업교류협력위원회를 두도록 함(안 제11조 내지 안 제16조).

- (1)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로 하고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.
- (2) 위원은 남북농업교류협력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, 남북교류와 관련이 있는 기관·단체에 근무하는 자, 충청북도의회 의원, 도 관계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
- (3) 위원회의 기능은 남북농업교류협력사업의 총괄·조정, 남북농업교류협력사업의 촉진을 위한 사항 등을 심의 또는 자문하도록 정함.
- (4)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 또는 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·단체에 대하여 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의견청취를 할 수 있도록 정함.

마. 남북농업교류협력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실무추진단을 둘 수 있도록 정함(안 제17조).

5. 검토의견

- 본 제정 조례안은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한의 인적·물적교류가 활발해지고 각 자치단체들이 남북교류를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음에도 우리도의 경우 교류실적이 저조하고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실정으로 이에 대한 조례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.
- 다만, 다른 시·도의 경우 교류사업 범위가 문화·체육·학술·경제분야 등 다양한데 비해 이번 조례안이 농업교류 사업에만 한정하는 것과 기금설치에 따른 재원확보 문제 및 기금의 사용용도등에 대해서 신중한 심의·검토가 요구되며, 시행상 문제점이나 향후 기금운영 방향등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 등에 대해 관련 부서의 의견을 들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.